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1432

발의연월일: 2021. 7. 9.

발 의 자:이종성·정운천·서일준

이종배 • 박대수 • 김예지

김태호 · 김형동 · 정찬민

임이자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경우, 해당장애인 표준사업장에 고용된 장애인 근로자를 해당 사업주가 고용하는 장애인 근로자 수에 포함하여 부담금을 감면해 주고 있음.

그러나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장애인 고용인원·고용비율 및 시설·임금등에 관한 인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인증이 취소되기 전까지는 부담금을 계속하여 감면 받을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됨.

이에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인증 취소를 받기 전이라도 그 인증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기간이 속하는 월에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를 실질적 지배 사업주의 근로자 수에 포함하는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부담금 감면을 제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고용을 실질적으로 촉진하고자 함(안 제22조제3항).

법률 제 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해당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제2조제8호에 따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기간이 속하는 월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정 혂 행 개 아 제22조(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제22조(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 ① ~ ② (생 략) 지원)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2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장 애인표준사업장을 발행주식 총 수 또는 출자총액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실질 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 는 제28조·제29조 및 제33조 를 적용할 때에는 그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를 해당 사업주가 고용하는 근로 자 수(다만, 여성・중증장애인 을 제외한 장애인은 그 총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수를 말하 며. 그 수에서 소수점 이하는 올린다)에 포함하고, 해당 장애 인 표준사업장을 해당 사업주 의 사업장으로 본다. <단서 신 ----. 다만, 해당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제2조제8 설> 호에 따른 기준에 미치지 못하 는 기간이 속하는 월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